

우리 지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지 만 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과장 iiims@korea.kr



최상원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행정사무관 choisw73@korea.kr

1. 안전보안관 도입배경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시설 관리자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관계당국의 단속 · 점검이 소홀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크게 증대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및 점검은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자체점검에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들을 도출해 법ㆍ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대대적인 안전신고 ·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 점검 인력 및 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동참하는 신고 · 점검의 활성화 계기 필요하여 예방적 안전신고. 점검에 안전보안관1)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계획

안전보안관은 필요 기능만 집중하여 작동하고, 초반에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시간을 들여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안전보안관은 별도 조직의 구성이 아닌 모든 재난 · 안전 분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단계로 재난 · 안전 전문가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2단계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해

¹⁾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 리 사회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안전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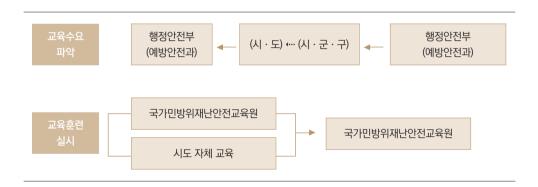
나갈 계획이다.

1단계 안전보안관의 구성 단위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2개를 포함하여 총 229개 이며, 구성 단위별로 화재·교통·산업 등 다양한 생활안전 위해(危害) 분야를 고려하고 인원은 4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안전보안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의 통·반장, 재난·안전 분야 단체²⁾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안전보안관 선발 절차를 보면, 안전보안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주소지 시군구 해당 과에 안전보안관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시군구에서 교육신청자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로 교육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 안전보안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들에게 안전보안관증(수료증 대체)을 발급하여 준다.

또한, 안전보안관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구성 초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도에서 직접 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면, 교육수료자들에게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안전신문고앱의 사용방법 그리고 안전보안관 활동 방향과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안전보안관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 · 활동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진행한다.

²⁾ 전국자율방재단, 전국의용소방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 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 한국안전시민연합,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안전진흥 협회,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한국레저안전협회 등 55개)

이렇게 선발한 안전보안관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³⁾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보안관을 점검에 참여시키려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월별 테마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점검 전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방해 점검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안전점검 참여실적은 시 · 도에서 시군구 실적을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보안관 활동의 결과물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시도별 안전 위반행위 신고 활동과 조치사항을 매월 집계하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또한 재난관리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로 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자발적인 신고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할 경우 활동시간에 따라 실비 변상 성격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시군구·시도별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특별히 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은 표창을 상신하고, 안전신문고 포털엔 참여방을 개설해서 안전보안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교육을 이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발급해 주는 안전보안관증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시비 또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활동 하고 있는 일부 재난 · 안전 분야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져 단체 설립기간에 비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근거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정책과 집행에 주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을 시정하는 역할을 단단히 하게 될 것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예산지원 등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과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대책

안전보안관이 위반행위를 신고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 작업장 안전사고, 교통사고, 산불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³⁾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 용. 등산 시 화기 ·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기존의 분야별 안전 종합대책과는 달리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도출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전무시 관행 발굴은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조사 실시(중앙-지자체, 정책고객 의견수렴 병행)한 결과 총 1.317건 접수(참여 국민 1.181건. 중앙-지자체 113건, 정책고객 23건)되었고, 안전무시 관행·행태 등에 대한 언론보도·통계 등 자체 분석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행을 1차로 4개 분야(화재. 교통, 건설, 생활·레저) 20개를 발굴하였고,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추진할 7대 관행을 선정하였다.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은 이를 방치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다수 희생자 발생)이 높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속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관행을 선정하였다. 이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은 국민과 함께 4가지 측면(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안전문화 교육 및 신고 · 단속강화)의 종합적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3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안전무시 관행 근절! ▮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4가지 측면의 종합적 근절대책 추진 안전사고 법·제도 감축 인프라 개선 신고·단속 안전문화 강화 사람 중심 안전문화 정착 행정안전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4가지 측면의 종합적 근절대책 추진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첫 번째 불법 주·정차 관행으로 소방차 진입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규정에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5m 이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있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25조(강제처분)에 의거하여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제거하여 이동시킬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뉴욕주)은 소화전 15피트(4.5m) 이내 주차 시 벌금 500달러(53만원)을 부과하고. 영국은 130파운드(19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은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법칙금을 상향(4만원→8만원, 경찰청·소방청)할 계획이다.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 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 조치하고, 이와 같은 강제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 등 중요시설의 표시방법을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소방차 출동 공간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1,139억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할 계획이다.

두 번째 관행으로 건물 내 피난시설(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포함)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병원, 백화점, 극장 등에서 보안 목적으로 비상구 폐쇄 및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상구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아파트 등에 비상해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비상구 폐쇄·잠금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상향(300만원 이하 과태료→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고의적·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난시설 · 소방시설 등의 고의적 차단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내부 피난통로(1.2m)와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종을 확대(7개→全 업종)하고, 안전약자 피난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피난장비를 확대(4종→6종)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강화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금 지급상한액(사망: 1억원→1억5천만원, 부상: 2천만원→3천만원, 대물: 1억원→10억원)을 상향할 계획이다.

세 번째 관행은 도로 주행 시 과적·과속운전을 하는 것으로 2017. 11. 발생한 청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는 브레이크 파열과 과속(규정 70km/h, 주행 118km/h)으로 인해 사상자가 10명(사망3. 부상7)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2~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59,790건이 발생(사망 353명)하였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일반도로 편차 1차로는 60km/h, 편차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법 제77조에 40톤 초과 과적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은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60km/h→50km/h) 조정 및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서행을 의무화 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운전면허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을 상향 조정(2종 60점. 1종 70점 →1 · 2종 모두 80점 이상)하고,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40개→50개) 조정한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시내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저속 운행 유도를 위한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되거나 부족한 과속방지턱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한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17.7월),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사례가 25%, 미설치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사례가 59%

네 번째 관행은 자동차 운행 중 안전띠 ·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으로 최근 5년간(2012~2016년)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사망자는 1.527명. 2016년 기준 어린이 승차 사망자(35명) 중 안전띠 미착용 비중은 37% 이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운전자석·동승자석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영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 안전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위반 시 고액 벌금 부과) 하고 있고, 미국은 출산 직후 카시트가 없으면 퇴원이 불가능하고 안전띠를 느슨하게 맨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2018.9.28.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음주 · 과속 · 무면허 및 중대사고 경력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관행은 건설현장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미착용과 안전교육 미실시이며,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1.830명 중 복장·보호구 잘못 사용으로 331명. 교육적 원인으로 8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ㆍ제25조ㆍ제31조에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1차 2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 영국은 보호구 착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싱가폴은 노동자에게 1회 1,000달러, 2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은 고소작업 등 유해·위험작업 시 노동자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이를 강화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보호구 착용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망 사고 다발 위험현장을 조기 파악하여 착공단계부터 적시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확대하여 고소·굴착 작업 등 고위험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순찰을 통해 보호구 착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관행은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고, 흡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8%, 밭두렁 소각 185,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6% 등 이다.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행위를 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산림보호법 제53조에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인화물질(휘발유·등유, 자연 발황성 물질, 기체연료 등)을 소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인화물질(휘발유·등유, 자연 발황성 물질, 기체연료 등)을 소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내용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산림보호법) 적용을 추진하고, 방화죄(산림보호구역 · 보호수 방화)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불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통제구역 지정 관리를 확대하고 산불의 명확한 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 조사 감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산불 가해자 감시 및 산불예방, 주요 등산로 및 산불 발생 다발 지역에 밀착형 CCTV 설치를 1.448대에서 1.800대로 확대하고. 산행 나들목에 화기물 보관함 운영을 확대(1,200개소→2,000개소)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길목 지키기 감시초소를 확대(1.500개소→1.600개소)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관행은 레저 또는 조업 활동 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 제36조에 낚시 어선업자, 선원, 승객 등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형선박(20톤 미만 선박 및 24m 미만 유람선) 승선자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은 어로 작업 및 기상특보 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낚시유선 범위를 현행 3톤 미만 낚시 유선에서 모든 낚시 유선으로 확대하고, 유·도선 선원 및 종사자 등의 승객들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어선원들이 조업 중 착용을 불편해하는 고체식 구명조끼 대신 활동성이 높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구명조끼 경량화 및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아저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러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많은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기존 대책과 달리 금번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핵심은 바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ㆍ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행 개선의 기반을 만들고 국민은 각종 재난안전단체와 함께 직접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전개한다면 어렵더라도 점차 우리 속에 잠재된 안전 불감 의식이나 행태들이 개선되리라 믿는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뀌리라 믿는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나라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나라를 버티게 한 국민들의 힘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우리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꼭 이것만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안전보안관들의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기대해 본다.